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5일, 김준혁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1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4.12.23.)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교육위원회(2025.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준혁의원)

최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급증하고(2023년 207.1% 증가)
‘대학생 마약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학생 마약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
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미성년자 환자수, 처방건수, 처방량이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심각함.

현행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예방교육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표준안에 따라 교육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흡연, 음주, 고카페인 식품에 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마약 중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교육 표준안에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재 구성이 전문적이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예방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은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문인력이 담

당하는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또한, 기존 보건교육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법정 교육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교육인력을 확보하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음.

다만, 현재 학교에서는 보건교육 외에도 학교안전법에 따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이 기존 교육과 정합성을 유지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교육을 전문인력이 전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사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개정안은 보건교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기존 법령에서도 마약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내실화하는 방안과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 ‘마약류대책협의회’와 유사·중복되는 협의체인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학교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상 교육을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연계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는 기존의 유사·중복 실태조사에 포함되도록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 .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학교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상 교육을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연계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는 기존의 유사·중복 실태조사에 포함되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3제2항 후단 중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며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과”를 “다음 각 호의 교육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를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로, “평가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내용과 효과성 평가 결과를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를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중 “,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효과성 평가의 절차·방법 및 제6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를 “ 등에 관하여”로, “대통령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 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

할 때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안 부칙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9조의3(마약류 중독 · 오남용 예방 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	제9조의3(마약류 중독 · 오남용 예방 교육)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 -----

<u>독·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u>	----- ----- ----- ----- -----.
<u>이 경우 마약중독 예방교육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 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며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u>	----- ----- --- <u>다음 각 호의 교육과</u> ----- -----.
<u><신 설></u>	<u>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u>
<u><신 설></u>	<u>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 안전교육</u>
<u><신 설></u>	<u>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u>
<u>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효과적인</u>	<u><삭 제></u>

마약중독예방교육
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전담하
는 전문교육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3
년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
용에 대한 실태조
사와 마약중독예방
교육에 대한 효과
성 평가를 실시하
고, 실태조사의 내
용과 효과성 평가
결과를 마약중독예
방교육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 「마약류 관
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평가가 포함되도
록 적극 협력하여
야-----.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
중독예방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제3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
하여야 한다.

<삭 제>

⑤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 예방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및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실
시한 경우에는 이
를 교육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⑥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 예방 교육
관련 정책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교육전문가, 마
약류 관련 전문가,
의료인, 교원, 관
계 부처 공무원 등
으로 협의체를 구
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마약중독

⑤ _____

	<u>예방교육의 실시</u> <u>시기·방법, 제4항</u> <u>에 따른 실태조사</u> <u>· 효과성 평가의</u> <u>절차·방법 및 제6</u> <u>항에 따른 협의체</u> <u>의 구성·운영 등</u> <u>에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u> <u>다.</u>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1</u> <u>년이 경과한 날부</u> <u>터 시행한다.</u>	----- ----- <u>등에 관</u> <u>하여</u>----- --<u>교육부령</u>----- --. 부칙 -----<u>6</u> <u>개월</u>----- -----.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중독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 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3(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중독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u> <u>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u> <u>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u>

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
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
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
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
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
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마
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